

#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

김진영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jinyoungkim@cni.re.kr

본 연구는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성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충청남도 해양공간의 용도구역지정방안(안)과 해양공간계획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음

## CONTENTS

1. 해양공간의 및 해양공간계획의 정의
2. 우리나라 해양공간관리제도의 현황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3.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4. 충청남도 해양용도구역 지정(안)
5.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 체계 구축 방향

## 요약

- 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통합적 해양관리계획 및 방안에 대한 관심 및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가 진행 중임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2018)
-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의 기본방향으로 “환경·생태와 주민의 삶이 어우러지는 상생적 해양공간” 설정함
  -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생태 공간 조성”과 “풍요로운 해양 수산 자원을 위한 해양 공간 조성”을 2대 목표로 설정하고
  - 추진전략으로 1)해양생태·환경 건강성 복원·회복, 2)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공간, 3)바다와 공존하는 해양관광, 4)상생적 해양공간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설정함
- 종전 연안관리법에 의한 19개 연안해역기능구 및 기존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각종 구역 지정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충청남도 해양용도구역 지정(안)을 제시함
-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1)인적자원 및 조직의 정비, 2)해양공간정보의 수집·관리, 3)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제안함



# 01

## 해양공간 및 해양공간계획의 의의

### 1. 해양공간의 의의

- 해양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수요는 전통적인 어항·항만, 수산, 연안개발 부문에 더하여 해양자원개발, 해양에너지 개발 등 새로운 영역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가장 전통적 영역인 어항·항만 및 배후단지의 개발, 수산업 및 양식업을 위한 해양공간의 활용을 위한 수요 증가
  - 해수욕장, 마리나, 크루즈 등 해양관광 목적을 위한 해양공간 활용 증가
  - 해양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구역 설정
  - 심해저자원, 심층수 개발, 해양유전 및 해양광물자원 개발
  - 해상풍력, 조력발전, 파력발전, 온도차발전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해양공간의 이용
- 해양공간의 개발·이용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동일한 해양공간을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갈등 문제도 심각함
  - 해양공간과 자원을 둘러싼 개발과 보전의 갈등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
  - 해양자원에 대한 과다사용, 자원 남획, 자원고갈,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해양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부처 간, 부서 내 경쟁 및 정책갈등이 발생함

- 해양공간에 대한 증가하는 이용 수요를 관리하고, 개발 및 이용에 있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해양공간의 개발·이용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방안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 해양공간에 대한 수요가 서로 상충할 경우 조정 가능 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개발과 보전 간의 갈등이 지속됨
  - 현재 해양공간은 해당 부처별 목적에 따른 선점식 이용으로 인해 난개발의 우려가 높음 상황임
  - 해양공간과 관련된 제도들은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들은 소관부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르게 이해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 해양공간을 국가 및 지역경제 공간으로 활용하고, 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통합적 해양관리계획 및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음
  - (영국) 2009년에 제정된 해양 및 연안 접근법(Marine and Coastal Access Act)을 근거법으로 하고, 해양정책지침(UK Marine Policy Statement, MPS)을 정책적 기본 틀로 하여 해양공간계획을 수립·집행)<sup>1)</sup>
  - (벨기에) 1999년 1월 해양환경법(Marine Environment Act, 1999)의 제정을 통하여 국가 수준의 해양 공간계획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수립, 2014년에는 북해의 벨기에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 계획(Maritime Spatial Plan for the Belgian Part of the North Sea)을 수립(Belgian Ministry of Environment, 2014)
  - (미국) 2010sus 통합적 해양관리체제 구축 및 상충 조정을 위해 오바마 정부 권고에 따라 연방정부차원에서 연안·해양공간계획제도(Coastal and Marine Spatial Planning, CMSP)를 도입·이행(최희정 외, 2011)
  
- 국내에서는 해양공간, 해양생태계의 가치,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공간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해양수산부, 2018)
  -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2016년 ~ 2017년 경기만, 2018년 부산, 경남, 2019년 전남, 제주, 울산, 서남해안 EEZ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로 선정 :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84번)”의 이행을

1) <https://www.gov.uk/topic/planning-development/marine-planning>

- 위한 실천과제로 ‘해양공간 통합관리’가 선정됨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의 제정·공포(2018)
-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2019 ~ 2028) 수립(2019)

● 충남의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의 필요성 증대

- 충청남도 2020년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임
- 2022년 이후, 광역자치단체별 독자적 해양공간계획을 수립이 필요함

## 2. 해양공간계획의 의의

●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 MSP)은 최근 국제적으로 해양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수단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대두된 개념임

- 영국 환경식품농어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에 의하면 해양 공간계획은 해양 공간의 사용과 그 사용으로 인한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조직을 만들고, 해양 생태계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고, 개방되고 계획된 방법으로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의미한다고 규정함(DEFRA, 2008)
- 유네스코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UNESCO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는 해양 공간계획에 대해서 “해양 공간계획은 일반적으로 정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생태적, 경제적 및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의 공간 및 시간적 분포를 분석하고 할당하는 공개적인 과정으로서 해양 공간계획의 특징으로는 생태계기반, 지역기반, 통합, 적응력, 전략적 및 참여적 특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함<sup>2)</sup>

●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해양공간관리제도”란 해양공간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인공적인 작용 및 그 결과가 해양생태계와 해양공간을 이용하는 인간의 행위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 관리하는 제도로써 인·허가, 특허, 용도구역제, 계획 등을

2) <https://msp.ioc-unesco.org/>  
<https://msp.ioc-unesco.org/about/marine-spatial-planning/>

정책수단으로 활용함(최환용, 2015)

## 02

# 우리나라 해양공간관리제도의 현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 ● 해양공간계획 도입을 위한 과정

-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공간계획법(가칭) 법률(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함
- 경기만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진행됨
  - (목적)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실현을 위해 해양공간계획체제 도입에 앞서 계획과정 모델 및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함임(최희정 외, 2015)
  - 경기만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분석과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 및 보전수요 분석을 통한 해양용도구역설정으로 경기만해역의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함

###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제정·공포(2018)<sup>3)</sup> 및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2019)

- (주요내용) ①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에서 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체제로 관리 패러다임 전환, ② 연안 및 EEZ를 포함하는 우리나라 관학해역 전체에 대한 해양공간 통합관리 근거 마련, ③ 해양의 이용·보전 계획 등의 수립 전 입지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제도 도입 등
-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변경할 것을 규정함

3) 2019년 4월 18일 시행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 (정의) 해양공간계획의 핵심요소로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정하는 구역으로 해당행위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을 말함
- 각 용도별 특성에 따라 필수적 지정기준과 관련 법률·제도에 따른 법제적 지정기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9개 구역으로 분류함
  -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 개발 구역, 에너지 개발 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 관리 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표 1] 해양공간계획법에 의한 해양용도구역의 정의

해양용도구역	정 의
어업활동보호구역	-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에너지개발구역	-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해양관광구역	-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항만·항행구역	-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군사활동구역	-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안전관리구역	- 해상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자료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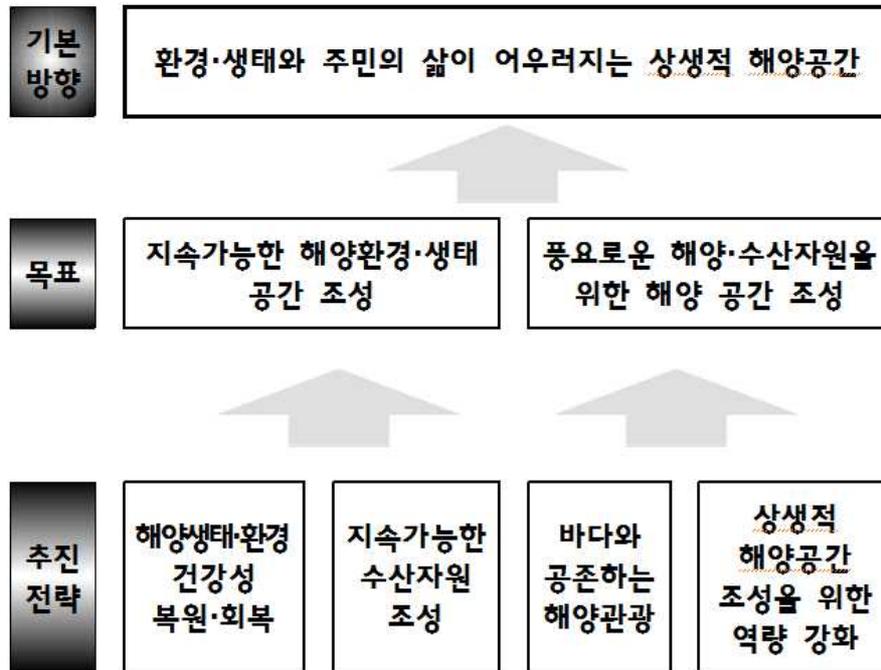
# 03

##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의 기본방향을 “환경·생태와 주민의 삶이 어우러지는 상생적 해양공간”으로 설정함
  - 이러한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생태 공간 조성’과 ‘풍요로운 해양·수산자원을 위한 해양 공간 조성’을 2대 목표로 설정함
  - 추진전략으로 1) 해양생태·환경 건강성 복원·회복, 2)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공간, 3) 바다와 공존하는 해양관광, 4) 상생적 해양공간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설정함
-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생태공간 조성) 바다가 지닌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보전을 전제로 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공간의 이용을 추구함(충청남도, 2015)
  - 해양환경 보전을 통하여 어장환경 보전 및 개선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산·양식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의 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임
  - 해양관광의 경우에도 해양환경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의 피해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환경보전을 통한 생태관광의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고, 이는 결국 지역주민들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풍요로운 해양수산자원을 위한 해양 공간 조성) 해양수산자원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이를 활용하는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함을 의미함

- 해양공간계획은 어민들의 어업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
- 하위 법령을 통한 단순규제보다는 어업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

[그림 1]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추진전략 1 : 해양생태·환경 건강성 복원·회복

-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환경·생태계관리구역지정
-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교육보전구역 지정
- 갯벌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지정

● 추진전략 2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공간

-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공간 보호를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
- 어장환경 및 연안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지속적·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연구·교육 보전 구역 지정

● 추진전략 3 : 바다와 공존하는 해양관광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구역의 지정
- 생태관광을 위한 해양관광구역 지정

● 추진전략 4 : 상생적 해양공간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

-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 조정 기제 마련
- 해양공간계획 수립·집행을 위한 조직적 체계 정비

## 04

# 충청남도 해양용도구역 지정(안)

- 종전 연안관리법에 의한 19개 연안해역기능구 및 기존 각종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각종 구역 지정 상황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해양용도구역 지정(안)을 제시함
- (어업활동보호구역) 기존의 면허어업 구역, 국가어항(9개소), 지방어항(28개소)의 어항구역, 인공어초 설치,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지 주변 수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민들의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음
  - (정의)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기존구역) 연안해역기능구 중 어항구와 어장구
  -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4.3%가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충남의 해양공간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응답
  - (해양용도구역 중요도에 관한 우선순위 조사) 응답자의 87.8%가 가장 중요한 용도구역이라고 응답
-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기존의 채굴권 설정 구역, 골재채취 예정지, 골재채취단지, 채취권 설정 구역 등
  - (정의)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기존구역) 광물자원구, 광업법 제9조의2 제2호에 따른 채굴권 설정 구역,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및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에 따른 채취권 설정 구역

- 충남해양의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은 기존의 구역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기존의 구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 신규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및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임

● (에너지개발구역) 기존의 산업시설구, 화력발전소 주변 해역, 해상풍력 예정지(연구 교육보전구역 지정 이후)

- (정의)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기존구역) 산업시설구
- 기존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대기의 질, 해수온도, 해양오염 등과 관련하여 환경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지속적인 환경모니터링이 필요함

● (해양관광구역) 기존의 해수욕장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마리나 예정지 주변, 난지섬, 원산도 등을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해양보호구역(환경·생태계 관리구역으로 지정)중에서 해양생태관광지로 조성이 가능한 지역※

- (정의)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 (기존구역) 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 해양환경·생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해양관광구역으로의 지정을 고려해야함. 특히 유부도의 경우 생태관광지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환경·생태계관리구역과의 조정을 통하여 해양관광구역으로의 지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충청남도의 해양환경·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해양보호구역(신두리 사구해역, 서천 갯벌, 가로림만 해역)에 대한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의 지정이 필요함. 근소만과 천수만※ 일대에 대한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의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의)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 (기존구역) 해양수질관리구, 해양환경복원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

호구, 공원구, 해양문화자원보존구, 재해관리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 충청남도는 해양환경·생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음
- 해양수산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분석,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에서도 가장 강조가 되었던 부분이 해양환경과 관련된 내용임
- ※ 천수만 지역은 방조제 건설 이후 수질악화, 어장면적 축소 등으로 어류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철새의 이동경로임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생태계 관리구역의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구·교육보전구역) 격렬비열도 인근, 기존 해양보호구역(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중 과학적·생태적 연구의 필요성이 큰 지역,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하천 하구, 고수온(천수만) 또는 저수온(가로림만, 천수만) 피해 방지를 위한 측정망 구축이 필요한 지역 등을 연구·교육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관리를 수행해야 함

- (정의)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기존구역) 해양조사구
- 충남의 해양공간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 또는 체계적·지속적인 자료 축적이 충분한 상황은 아님. 장기적으로 환경·생태에 기반을 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함

- (항만·항행구역) 기존의 항만구역을 포함하여 보령신항 예정지역 주변 마리나항만 개발 예정지 등을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정의)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기존구역) 항만구와 항로구,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박지 및 동조 제11호에 따른 항로, 해상안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항로, 제68조 제1항에 따른 통항분리수역 등

- (군사활동구역) 기존의 군사시설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구역을 유지하고,

기존구역에 대한 환경관리 방안 마련 및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특히 해상훈련 및 사격구역의 경우 훈련 시 선박통제, 조업선박의 대피 등이 필요하므로 선박통행과 어업활동 및 해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정의)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기존구역) 군사시설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 (안전관리구역) 등대, 항로표지 등 해양시설물과 해수욕장의 위험구역, 단위면적당(가로 1km, 세로 1km)각종 어선 사고밀도(조난, 충돌, 침몰 등)가 높은 지역 등을 안전관리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정의)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안전관리구역의 설정을 위하여, 해사안전통계, 해상교통 안전지수 등의 개발 및 표준화가 필요함

[표 2] 충청남도 해양용도구역 지정(안)

해양용도구역	대 상 지
어업활동보호구역	- 기존의 면허어업 구역 - 국가어항(9개소), 지방어항(28개소)의 어항구역 -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의 어항구역 - 인공어초 설치,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지 주변 수역
골재·광물자원 개발구역	- 기존의 채굴권 설정 구역, 골재채취 예정지, 골재채취단지, 채취권 설정 구역 등 * 2017년 이후 신규허가 없음 * 신규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및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 필수
에너지개발구역	- 기존의 화력발전소 주변 - 해상풍력 예정지(연구·교육보전구역 지정 이후)
해양관광구역	- 기존의 해수욕장 주변 지역 - 마리나 예정지 주변 - 난지섬, 원산도 - 기존의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생태관광조성 가능지 - 천수만, 금강하구와 유부도 생태관광지역(환경·생태관리구역과 조정 필요)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 기존의 해양보호구역(신두리 사구해역, 서천 갯벌, 가로림만 해역) - 근소만, 천수만 일대
연구·교육 보전구역	- 격렬비열도 인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해양보호구역 중 필요한 경우</li> <li>-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하천 하구(차후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관광구역으로 변경)</li> <li>- 고수온(천수만), 저수온(가로림만, 천수만) 피해 방지를 위한 측정망 구축 주변</li> </ul>
항만·항행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태안항, 보령항, 대천항, 비인항의 항만구역</li> <li>- 보령신항 예정지역</li> <li>- 기존의 정박지, 항로</li> </ul>
군사활동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li> </ul>
안전관리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가 필요한 해양 시설물</li> </ul>

# 05

##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 체계 구축 방향

- (인적자원 및 조직의 정비) 충청남도 차원에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인적·조직적 정비가 필요함
  -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의 수립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인적자원의 부족과 담당 조직의 불명확성에 있음
  - (1안) 현재 제정된 해양공간계획법의 내용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팀에 해양공간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지정하는 방안
  - (2안) 과의 주무팀이 담당하는 방안
  - 전담부서 설치를 통하여 해양 공간 이용 상충에 대한 중재 및 조정 기능 강화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전에 입지를 지정하는 능동적 해양 공간 정책 추진이 필요함
  
- (해양공간정보의 수집·관리) 충청남도 차원과 시·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양공간과 관련된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가 필요함
  - 시·군 차원에서 직접 수집·관리하는 해양수산정보들 뿐 아니라 현재 해양수산부 또는 유관기관이 수집·관리하는 정보도 포함
  - 시·군별로 생산되는 해양수산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수집·연계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수집·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양식, 속성정보 유형, 수집 주기 및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보전과 개발, 개발과 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갈등 및 분쟁의 조정·방지를 위한 조정 매커니즘이 필요함

- 관(충청남도과 연안시·군), 민(연안환경, 수산업, 해양레저, 항만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통합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체 운영이 필요함
  - 충남 해양공간에서 생활하고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 주체들(어촌계장, 어민대표, 환경단체, 지역전문가, 낚시업자, 연안개발업자 등)을 참여시켜 현실감 있는 협의체 운영을 지향해야 함

김진영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jinyoungkim@cni.re.kr

※ 본 리포트는 충남연구원 2018 전략과제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요약, 재구성한 것입니다. 보고서 인용 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최환용. 2015. 해양공간계획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최희정 외. 2011. 해양자원의 최적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연구 : 해양공간계획 체계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최희정 외. 2015. 해양공간계획체제 정립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충청남도. 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청남도.
- 해양수산부. 2018. 해양공간 통합관리 추진 관계기관 워크숍 자료집. 해양수산부.
- Belgian Ministry of Environment (Marine Department). 2014. Maritime Spatial Plan for the Belgian Part of the North Sea. Belgian Ministry of Environment (Marine Department).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2008. The Marine and Coastal Access Bill. United Kingdom.
- <http://msp.ioc-unesco.org/> UNESCO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
- <http://www.msp-platform.eu/countries/belgium> European MSP Platform(유럽 MSP 플랫폼)
-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marine-management-organisation> UK Marine Management Organisation(영국 해양관리기구)